



대한민국명장 증서

직종:

성명:

귀하는 숙련기술자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"대한민국명장"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통 령

작 인

이 증서를 대한민국명장증부에 기입함. 제 호

고용노동부장관

작 인